

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 춘 곤 위원

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!
김 춘 곤 의원입니다.

지난 3월 28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본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발의취지를 말씀 드리면,

최근 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하려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이 크며, 사례로는 ‘마포 소각장 추가 설치’, ‘마곡 열병합발전소 건립 사업’에서의 지역주민들 반발이 대표적입니다.

본 조례의 물재생센터 주민편의시설 지역주민 감면율 40%는 피해를 보는 물재생센터 주변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 차원에서 2014

년 1월부터 적용하였으나, 물재생센터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 호소 및 감면율 확대 요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,

물재생센터 지역주민 감면율을 기존 40%에서 80%로 조정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인근 지역주민 민원을 최소화하고 복지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 드린 원안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,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